

제6조 (운영재원) 장기요양서비스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은 보조금,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이용료 등으로 한다.

제2장 利用規程

제7조 (이용대상자)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이용 기준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1등급~5등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 (이용자 모집 방법)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모집 방법은 '치매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 노인장기요양인정 1등급~5등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지역사회 내 대상자 전수조사를 통한 모집
2.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노인장기요양보험 블로그 등을 통한 모집
3. 전단지 제작, 홍보물 비치, 홈페이지 제작 등을 통한 모집
4. 기타 적절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한 대상자 모집

제9조 (계약 및 계약목적) 본 규정은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본 서비스와의 계약 시에는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1) 장기요양인정서
 -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4) 기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9조 제1항 (계약기간) 본 기관의 서비스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계약 기간은 인정서의 인정기간 범위 내로 한다.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한다.
2. 아래의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 기간은 변경 될 수 있다.
 - 이용대상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기입원 시

- 보호자의 사정에 의한 해지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 기관의 해지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등

제10조 (이용료)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다음의 각 호에 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1. 이용료는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경대상자는 6% 또는 9%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2.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전액 부담한다. 단 이용자의 특성으로 고려하여 면제사유 발생 시 면제할 수 있다.
3. 이용료는 매월 30일 전까지 후납 하도록 한다.
4. 이용료의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 한다.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본인부담금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른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의 안전한 활동여건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요양급여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
- ②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 할 수 있음.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②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부담
- ③ 인적사항 및 거주지, 장기요양보험 관련 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 및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협력
2.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3.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4.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2025년 재가급여 수가 안내

■ 등급별 월 한도액

<별표1>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657,400원

■ 방문요양

분류번호	방문당 시간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가-1	30분	16,940원	2,541원
가-2	60분	24,580원	3,687원
가-3	90분	33,120원	4,968원
가-4	120분	42,160원	6,324원
가-5	150분	49,160원	7,374원
가-6	180분	55,350원	8,303원
가-7	210분	61,670원	9,251원
가-8	240분	68,030원	10,205원

■ 방문목욕

분류번호	구 분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나-1	차량 이용(차량 내)	86,480원	12,972원
나-2	차량 이용(가정 내)	77,970원	11,696원
나-3	차량 미 이용	48,690원	7,304원

■ 본인부담 비용 : 월 이용 한도액에서

일반	15%
의료급여수급권자	6% , 9%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없음
※ 입금은 매달 말일에 본인 부담금을 아래 계좌번호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502901-01-364318	
예금주 : 복지세상사회적협동조합 방문목욕센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주 소	0185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127	홈페이지	www.scoop.kr
전화번호	070-8224-6371	팩스	02) 948-0523
		이메일	bokji6371@naver.com